

문서번호	재무과-17124
결재일자	2015.10.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재산관리담당	재무과장	기획경제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윤춘선	심재원	최상균	이용식	김병환	10/01 김영배
협 조					

- 석관2구역 비점유지 -
공 유 재 산 매 각 계 획



**기획경제국
재 무 과**

석관2구역 비점유지 공유재산 매각계획

2008.5.30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석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비점유분 공유지에 대한 매수신청이 있어,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구 수입증대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추진 개요

■ 추진근거
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36조 : 일반재산의 매각
-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66조 : 국·공유재산의 처분 등

■ 매각 대상 현황(비점유지)

- 매각 면적 : 1,302.10㎡

■ 매수 신청 현황

- 매수신청자 : 석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- 매수신청일 : 2015.9.23
- 매수신청 토지 평가현황(세부내역 별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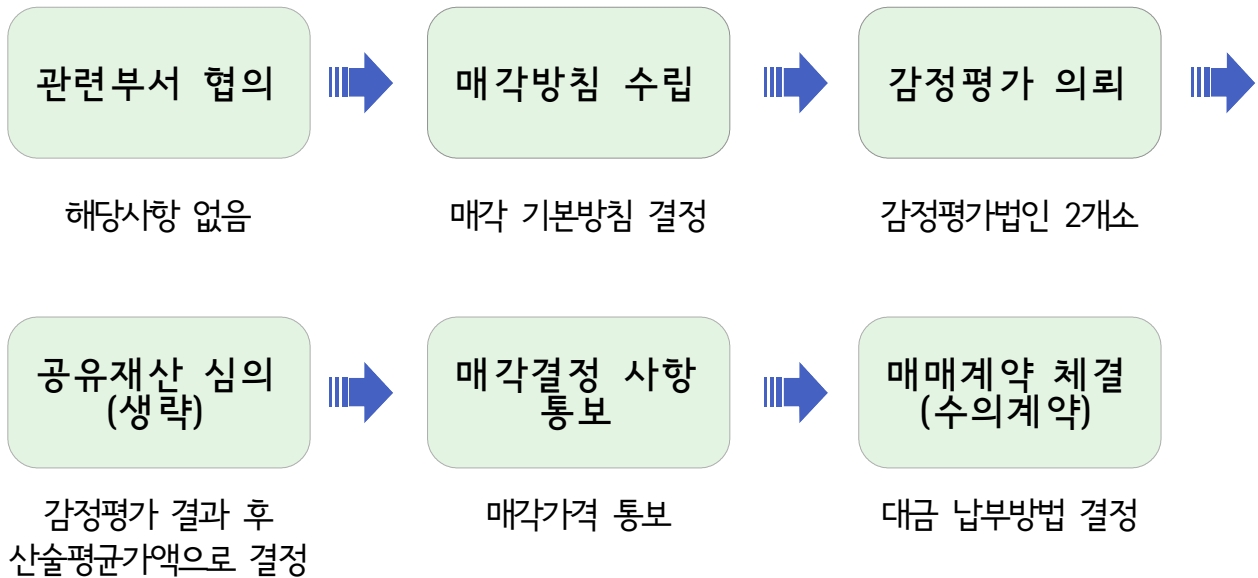
(단위:천원)

연번	매수자	소재지	매수면적	조합 감정평가액	비고
1	조합	석관동 45-40 외 8필지	1,302.10㎡	2,537,828	

II

매각 계획

■ 매각절차



■ 매각방법

● 매각방식 : 수의계약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(국유·공유 재산의 처분 등)에 따라 정비구역안의 국유·공유 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.

■ 매각금액

● 감정평가법인 2개업체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

※ 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산정 : 조합 일괄납부 가능

III

행정 사항

● 감정평가 의뢰 : 2015.10월 중

- 변상금 부과 및 매매계약 체결 : 감정평가 완료 후
- 관련부서 통보 : 세무1과,지적과,주거정비과

붙임 : 공유재산 매수신청 조서 1부. 끝